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6월 2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한 우리구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그 밖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 (안 제11조)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위촉위원 중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참여하도록 규정 마련
- 나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 정비 (안 제20조, 안 제41조)
- 다. 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44조)
  - (현행) 2022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7년 12월 31일 (5년 연장)
- 라.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여성가족과, 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, 2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(전화 : (02) 330-1689, FAX : (02) 330-1624, E-mail: egayeong@sdm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>구청소식>공고>입법예고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제정 내용	의견 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	비고